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  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1. 6. 26 동두천시장이 제출
   나. 회부일자 : 2001. 7. 2
   다. 상정일자 : 제10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
   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   제3차 본회의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   가. 제안이유
  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·시행으로 「특정용도제한지구」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지구내에서 숙박 및 나이트클럽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함.
   나. 주요골자
   특정용도제한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대하여 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  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·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구외의 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따라 2001. 1. 18 개정 공포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구안에서의 건축, 기타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거유해 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   " 생 략 "
5. 토 론 요 지
   " 없 음 "
6. 심 사 결 과
   " 원안가결 "